

육계산업 발전 대책



주동철 사무관
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

비전

FTA 등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육계산업 육성

목표
(2018)

- 시설 현대화, 계열화사업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발전 유도
 - ▷ (계열화사업 강화) 건설한 계열주체가 전체 물량의 90% 이상 취급
 - (2013) 50개소 / 93.8% → (2018) 20개소 / 90%
 - ▷ (전업농 육성) 전업농 취급물량을 75%까지 확대(現 64.5%)
 - ▷ (유통개선) 부분육 유통 확대 : (2013) 30% → (2018) 35%
중량단위 거래 정착

세부
추진
과제

1.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

- 1) 규모화·전문화 유도
- 2) 종계 사육시설 개선
- 3) 적정 사양관리

2. 유통구조 개선

- 1) 부분육 유통 활성화
- 2) 중량단위 거래 정착
- 3) 사이버거래 활성화

3. 품질 고급화 및 수출·소비확대

- 1) 고급육 생산·유통 확대
 - 등급판정, 친환경·HACCP 인증 확대
- 2) 닭고기·가공품 수출 확대
- 3) 닭고기 국내소비 확대

4. 계열화사업 내실화

- 1) 우수 계열주체 육성
- 2) 공정거래 유도
- 3) 적극적인 분쟁 해소

5. 수급안정

- 1) 수급조절협의회 역량 강화
- 2) 가금산물 가격조사 체계 개선

1. 생산비 절감

가. 육계 사육농가 규모화·전문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

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규모화·현대화된 사육기반 마련

○ 무창계사 비율 확대 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조건 개선(금리인하 등 검토,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필요)

* 육계 시설형태 : 무창(40~45%), 유창(25~30%), 하우스 등(30%)

* 육계 생산성(무창 대비) : 유창(85~90%), 하우스 등(60~70%)

○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전업농(5만마리 이상 사육)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

- 전업농 취업비율을 2013년 64.5%에서 2018년 75%까지 확대(연평균 증가율 2.46%)

* 전업농 현황 : ('05) 329농가 / 비율 20.9% → ('10) 601 / 34.1 → ('13) 648 / 41.4

* 전업농 사육규모 : ('05) 22.6백만마리 / 44.8% → ('10) 44.0 / 56.5 → ('13) 49.3 / 64.5

■ 계열업체의 육계 생산·가공시설 개선 지원

○ 계열업체 보유 시설(생산, 가공 시설 등)에 대한 시설 개보수 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

○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인하 등 지원 조건 개선 추진

- 특히 모범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자금(연리 0~1%) 지원 확대

* 인센티브자금 : ('14) 90억원 → ('15) 150억원

■ 고효율 LED 조명 보급 확대, 에너지 절감 유도

○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에 LED 조명 포함(사육시설 개선 시 포함)

* 효과 : LED 점등 시 백열등 대비 70% 전기에너지 절약과 7.4% 산란수 증가

나. 종계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한 병아리 생산비 절감

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범위 확대

○ 종계장 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유도

- 사업시행지침 변경을 통해 기존 종계장 뿐만 아니라 신규건립 및 증축 종계장도 지원대상에 포함

* 육계 생산비 : 병아리(18.7%), 사료(62.0), 수도광열비(4.4), 방역치료비(2.2), 기타(12.7)

○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종계장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

다.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및 적정 사양관리 유도

-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추진('13 ~'17, 축산과학원)
 - 자연 친화적인 가금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모델 개발 등 고품질 안전 가금산물 생산기술 개발
 - 고온 스트레스 저감 사료·첨가제 개발 등 가금 사육환경 개선 및 스트레스 저감기술 개발
- 우수농가 사례 보급 등을 통해 적정 사양관리 유도
 - 자조금을 활용하여 생산성 우수 사육농가의 모범 사례를 분석·발굴 및 정보제공
 - 사료비·에너지·기타 자재비 절감 등 항목별로 우수사례 분석

2 유통구조 개선

소비 변화에 대응하여 부분육 유통 활성화, 중량단위 거래 정착

- 부분육 유통 활성화
 - 닭 가슴살 등 특정부위에 대한 소비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부분육 생산·유통 활성화
 - * 도계장 : 통닭 70%, 부분육 30% / 식육포장처리업체 : 통닭 14.4%, 부분육 85.6%

- 축산계열화사업과 연계, 부분육 시설·장비 설치 희망업체 우선 지원
- 닭고기 소포장 유통 및 부분육 요리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
- 부분육 유통 활성화에 대응하여 대형닭 생산·출하 유도
 - 현행 닭고기는 통상 32일 사육하여 중 소형 닭(1.2~1.5kg) 출하, 대형닭(2.5kg 이상, 45일 이상 사육) 생산을 통해 생산비 절감 필요
 - * 대형닭 출하 시 kg당 341원 생산비 절감
 - * 외국닭 출하 중량 : 미국 2.6kg, 브라질 2.6kg, 유럽 2.2kg, 중국 2.5kg
 - 계열주체, 생산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형닭 생산 교육·홍보
- 닭고기 유통 중량단위 거래 정착
 - 부분육 유통과 연계, 현행 호수단위(100g 단위) 유통에서 중량단위로 유통 되도록 유도
 - * 호수단위(예) : 육계 11호(1,051g~1,150g)
 - 생산자·계열주체·유통업체·소비자 등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·운영,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중량단위 거래 홍보 추진

3 품질 고급화를 통한 차별성 강화

등급판정·친환경 닭고기 생산·유통 확대 등으로 고품질 이미지 확립

- 가금산물 등급판정 확대로 품질향상 유도
- 등급판정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, 학교 등 단체급식업소 및 대형 유통점 등에서의 등급판정 닭고기 소비 유도
 - 등급판정 닭고기 유통 목표 : ('13) 12.9% → ('18) 20% 이상
- 친환경 축산 확대를 통해 육계농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국산 닭고기의 웰빙 이미지 확대
 -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추진
- 환경 친화적인 육계 사육환경 조성
- HACCP 인증 확대, 안전성 제고로 폐사율 감소 및 약품비 절감 등 효과 발생
 - HACCP 인증에 필요한 시설 지원(축사시설현대화 사업)
- 친환경 인증 등을 받은 육계 농장에 대해서 정책자금 우선지원
- 도계장 외부 냉동시설 등 이용 등 제도 개선 추진
- 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외부 냉동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
 - ※ 도계장 내의 냉동시설을 이용하도록 의무화(관련 : 축산물위생관리법), 다만, 현 도계장의 시설 등을 감안하여 '15. 12월까지 외부 냉동시설 사용 허용(외부 냉동시설 이용 점검 유예)

4 수출 활성화 및 소비확대

가. 닭고기·가공품 수출 확대

- 미국 삼계탕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설지원 및 홍보·마케팅 추진
- 계열화사업자의 삼계탕 등 육계 가공시설 개선 우선지원
-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(aT) 및 가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언론홍보 및 대형매장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판촉행사 추진
- 타 가금류 가공품 수출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·업계 등과 협의
 - 업계의 가공품 수출의향 조사, 수출작업장 승인 등 관계기관 협조
- 신규 수출시장 개척 지원
- 수출가능 국가·품목을 지속 발굴, 해당 국가와 검역협약의 진행
- 수출 희망업체가 상대 국가의 검역조건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정보 제공(농림축산검역본부 협조)
 - 국가별·품목별 수출검역조건 및 검역증명서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·운영(농림축산검역본부 KAQIS)
- 수출 가금류의 물류비용 지원을 통해 농식품의 수출 확대
 - * 지원단가 : (정부) 표준물류비의 10% + (자체) 표준물류비의 25% 이내 추가 지원 가능
- 다양한 닭고기 가공식품 기술 개발
- 수출 대상 국가별 외국인 입맛에 맞는

가열조리식품(닭갈비 등) 상품을 개발,
수출확대 추진

- 식품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맞춤형 수출상품 개발

* 정책기획과제 및 농림기술개발과제(IPET)

추진 시 우선 선정

- 수출활성화를 위한 현지 홍보 지원
- 주요 수출국의 수요저변 확대를 위해 매스미디어 홍보 강화
 - 자조금을 활용하여 현지 대형유통매장 판촉행사 확대
- 수출활성화협의체 구성·운영
- 관련기관 및 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'수출검역지원협의회' 운영
 - 국가별·품목별 수출가능 품목 발굴, 수출 여건 조사
 - 수출 애로사항 및 수출확대 아이디어 발굴
- 해외 주재 농무관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 관련 정보 수집
- 토종닭 종계 해외수출 지원
- 토종닭 종계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검역협의 등 진행
 -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 등 검역협의 국가로의 수출 활성화 지원
- 필요 시 수출물류비, 홍보비 등 지원 검토

나. 닭고기 국내 소비 확대

- 시장 수요에 대응한 닭고기 상품 개발

- 닭 가슴살 등 특정부위 수요 증가 등 소비 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부분육 상품개발
 - 생산자협회,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부분육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

-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촉진 홍보 강화
-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국내산 닭고기의 안전성·우수성 등에 대한 홍보 강화
 -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 추진
- 배달용 치킨 등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홍보 실시
 -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국산 닭고기 사용량 증가 유도

5. 계열화사업 내실화

가. 우수 계열업체 육성

- 건전한 계열업체 육성 등을 통한 계열화 사업 내실화
- 건전한 계열업체의 점유비율 확대(90% 수준까지)
 - * 계열화사업자 점유비율 : ('13) 44개소 / 91.9% → ('18) 20개소 / 90%
- 계열업체 가공·유통·판매 시설자금 및 계약농가 운영비, 시설자금 등 종합지원 확대('13 : 92억원 → '14 : 284억원)
 - 모범사업자 지정 및 인센티브 자금(금리 0~1%) 지원, 계열화사업자 정보공

개* 등을 통해 건전한 계열화사업자 육성

* 세부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, 계열화사업자 등과 협의·결정

- 생산자단체의 축산계열화사업 참여 유도
-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축산계열화사업 참여 시 우선지원 및 금리우대 등 지원 조건 개선 검토(금리인하는 관계부처 협의 필요)

나. 공정거래 유도

- 표준계약서 활용, 권장을 통한 공정한 거래 유도
-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계약서* 보완·보급('13. 8월)
 - * 양측의 권리·의무, 사양관리, 계약기간, 계약 사육수수, 사육자재의 품질, 사육경비 지급,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을 명시
 - 표준계약서 이용률('14년 11% 수준) 지속 조사, 애로사항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이용률 제고
 - 질병·천재지변 발생 시 책임 귀속, 비용분담 기준 및 종계·종오리 생산주령 제한 완화 등 개정안 마련('14. 7월)
- '15년부터 표준계약서 활용하지 않는 계열화사업자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
- 사육자재·시설·출하가축의 품질기준 마련, 분쟁발생 사전예방
-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농가 간에 거래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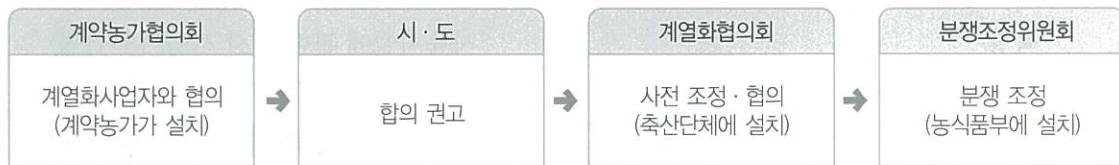
는 사육자재(가축·사료 등) 및 농가의 사육시설에 관한 고시 시행('13. 11월)

- 고시 이행여부 지속 지도·점검 실시
-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 강화, 계열업체·농가 신뢰 구축
-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사육규모, 계약서 및 이행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화
- 계약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(매년 2회 이상) 및 개선 권고·명령(시·도)
 - 위반사항 발생 시 과태료(3천만원 이하) 부과 등을 통해 시정 조치

다.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참여로 분쟁해소 및 조정 추진

- 계열업체별로 '계약사육농가협의회' 구성, 운영 활성화
- 계약내용, 공급자재 품질, 사육 및 질병 관리계획 등 자율 협의
- 정기적인 협의회 등을 통해 농가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전 갈등 해소 및 협력관계 구축
- 계열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관할 시·도지사가 참여하여 합의권고 유도(10일 이내)
 - * 시·도에 '합의권고지침' 마련 보급('13. 8월)
- 시·도지사가 요청한 분쟁 사전 조정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에 '계열화협의회' 구성·운영

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 절차



* 대한양계협회(육계·산란계), 한국토종닭협회(토종닭), 한국오리협회(오리)

- 농식품부에 '분쟁조정위원회' 설치·운영
- 계열화협의회에서 조정이 되지 않은 분쟁 사항과 계약서, 준수사항 등 분쟁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분쟁조정

*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, 계열화사업자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, 계약농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

6. 수급안정

- 수급조절협의회 역량강화를 통해 적정 사육 마리수 유지 유도
- 사육농가·계열업체 등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노력에 대응하여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 확대
 - 자율적 냉동(수매) 비축 실시에 따른 필요 자금 지원,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등
- 수급조절협의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비 지원
- 닭고기 자조금 활용 수급조절 추진
- 자조금 거출 확대 등을 통해 사업 다양화를 추진하고, 자조금의 일정 부분을

수급조절에 활용

- 자조금 관련 법률에 따라 닭고기 자조금 거출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, 미납자에 대한 점검 강화
- 자조금을 활용하여 소비촉진 홍보 등을 통해 소비확대를 유도
- 가금산물 가격조사 체계 개선
- 가금산물 가격조사 체계 개선을 위한 T/F팀 구성 운영('14. 7월~)
 - 생산자단체, 유통인, 정부, 지자체, 학계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가격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 추진
- 계열업체 물량의 가격자료 조사를 위해서 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격자료 제출·분석
 - 계열업체가 제출한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일일거래 기준가격 산출
- 산지 닭 거래가격 조사 표본수를 늘리고, 분기 1회 이상 가격조사에 대한 검증회의* 개최하여 객관성 담보
- * 생산자단체, 유통상인, 계열업체, 소비자 판매자 등이 참여하는 가격조사 검증회의 개최